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윤종 정책기획팀장, 강환일 사무관(044-203-4613)

「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」 공포·시행

- 중소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-
- 개발계획 변경 소요기간 6개월 단축 -
- 폐기물, 하수도, 공원 등 도시관리사무 기초 지자체로 이관 -

□ 내년부터 **중소기업**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**참여기회가 확대**되고, **개발계획 변경**에 소요되는 기간도 **6개월 정도 단축된다.**

○ 또한,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폐기물 등 **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**한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 확대와 계획변경 기간단축 내용을 담은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」이 **12.30일 공포·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**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**하고, **경제자유구역청**이 투자유치 등 **본연의 업무에 집중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개정안에 따르면,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**특수목적법인(SPC)**에 대한 자격요건자*들의 **필요적 출자비율이 100%에서 70%로 완화**해,

* 현행 자격요건자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(투자적정등급,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% 이상 등)

○ 30%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**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**할 수 있게 했다.

- '12년 광양만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를 검토한 중소기업 A사와 B사는 기업신용등급·자기자본 등의 **현행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엄격**해 **참여를 포기**한 바 있었으며, 이번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**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**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의 **9개 지역·지구의 개발계획*이 변경**될 경우 **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**주되어,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.

*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: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, 항만기본계획, 항만재개발사업계획, 마리나항만사업계획, 산업단지개발계획,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,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, 혁신도시개발계획, 관광개발기본계획

○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,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해야하는 등 **이중적 행정절차 추진**으로 **개발사업이 지연**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.

- '12년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C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,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관계로 개발사업 기간이 **당초 예상보다 6개월 정도가 연장**됐다.

□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 **폐기물, 하수도, 도로, 공원, 옥외광고** 등 **5개 도시관리사무**가 **기초 지자체로 이관**됐다.

○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도시관리사무의 기초 지자체로의 이관으로, **경제자유구역청**은 **개발, 투자유치 등의 업무에 집중**할 수 있게 됐다.

□ 개정안 중 개발계획 변경 이중절차 개선은 **공포 후 즉시**, 이 외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나머지 사항은 **내년 7월부터, 그리고 사무이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**한다.

□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**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, 절차가 개선**되어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강환일 사무관(☎ 044-203-46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